

의안번호	제 10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 월 31 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에도 오존(O₃)을 포함하고, 예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현행 대기오염 경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
(개정) 「충청북도 대기오염 경보 및 예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미세먼지(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예보 및 경보 등
- 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민의 책무(안 제3조)
- 예보의 내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경보 대상지역, 내용 및 기준,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안 제9조)
-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안 제10조)
- 시·도간 협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mu\text{m}$ 이하인 먼지
 -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mu\text{m}$ 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오존(O_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5. “오존 농도”란 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을 위한 시책과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는 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발령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경보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지역교육청장, 도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 제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오염 예보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예보내용		등 급($\mu\text{g}/\text{m}^3$)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정상적 야외 활동	실외활동에는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활동은 의사와 상의
	일반인	정상적 야외 활동	정상적 야외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 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나. 오존

예보내용		등 급(ppm,1H)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대상 물질	오존 (O3)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 실 외 활 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 는 없지만 몸상 태에 따라 유의 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 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활 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 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 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에서의 활 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별표 2]

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	도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중대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비고 1. * 미세먼지만 적용됨
 2. ** 오존경보시에는 시행하지 않음.

관련법령 발취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에도 오존(O₃)을 포함하고, 예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현행 대기오염 경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장 전병진